

"주 최대 52시간 시행,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"



고용노동부

## 서울지방고용노동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고시 개정 안내

---

1. 『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』(‘18.1.23.) 발표의 후속 조치로 당초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예정가격으로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보다 감액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『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』(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72호, ‘18.10.5.)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**? 개정내용(붙임 참조)※ 개정규정은 ‘19.1.1. 이후 신규계약 체결 건설공사부터 적용**  
?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  
?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고지  
?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계상 방법 구체화

2. 이와 관련하여, 위 개정고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공사 입찰?계약업무를 정비하여 주시고 유관기관에서는 개정 고시사항을 회원사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」 설명자료 1부. 끝.

##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

수신자 서울특별시장, 종로구청장, 서울특별시중구청장, 동대문구청장, 서초구청장, 서울시설공단이사장,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,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,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, 서울특별시교육감,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,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,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,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, 종로구상공회, 중구상공회, 서초구상공회, 동대문구상공회, 관내 유관기관, 관내 사업장 등

탐장

과장

협조자

시행 산재예방지도과-11825 ( 2018.10.19. ) 접수 기술심사담당관-16356 ( 2018.10.22. )  
우 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6층( 장교동, 장교빌딩) / seoul.moel.go.kr  
전화 02)2250-5798 /전송 02)2234-5986 / ahanl@korea.kr / 비공개(5)